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부제출(의안번호 제1053호)
- 정부제출(의안번호 제1121호)
- 정부제출(의안번호 제1176호)

2024.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개 요	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
2.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
3.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3
II. 제안 배경 및 주요내용	4
III. 주요 내용별 검토	6
1. 조례 위임 범위 확대	6
2. 중앙부처에 대한 보고 규정 정비	7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9

I. 개 요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부
- (2) 제 안 일 : 2024. 6. 27.
- (3) 회 부 일 : 2024. 6. 2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 수급자, 부양의무자 및 차상위계층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부
- (2) 제 안 일 : 2024. 6. 28.
- (3) 회 부 일 : 2024. 7. 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결핵환자 등에 대한 의료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결핵예방법」을 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중보건역사의 근무지역 변경 결과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별법」 등 6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부
- (2) 제 안 일 : 2024. 6. 28.
- (3) 회 부 일 : 2024. 7. 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해식품의 회수결과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II. 제안 배경 및 주요내용

□ 정부가 제출한 2개의 일괄 개정을 위한 제정법률안과 1개의 일부 개정법률안은 지방 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국가의 관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건 복지위원회 소관 11개의 법률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정부는 2023년 10월 27일 「지방자치법」 제186조¹⁾에 따라 설치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²⁾를 개최하여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방안”을 의결하였고, 이후 81개의 법률을 일괄적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제21대국회에 19개의 법률안³⁾을 제출한 바 있음.

- 우리 위원회 소관은 총 11건의 법률에 대한 개정사항이 2개 법률안으로 제출⁴⁾되었으며, 정비유형별로 ① 지방 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조례 위임 범위 확대) 1건, ② 지방 사무에 관한 중앙부처의 사전 승인 또는 보고 규정을 사후 통보 또는 의견 제출 규정으로 전환하는 내용(중앙부처 승인·보고 완화) 10건이었으나,

1) 「지방자치법」

제186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법률로 정한다.

2) 2021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을 공동 부의장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음.

3) 일괄개정 방식 7건, 개별법에 대한 일부개정 방식 12건.

4)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25372, 정부, 2023.11.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5373, 정부, 2023.11.13.)

동 법률안들은 제21대국회 임기만으로 폐기된 바 있음.

-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2개의 일괄 개정을 위한 제정법률안과 1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1대국회에서 제출되었던 것과 동일하게 ‘조례 위임 범위 확대’ 1건과 ‘중앙부처 승인·보고 완화’ 10건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소관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7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3개 및 질병관리청 소관 법률 1개임.

< 우리 위원회 소관 개별법 정비 대상 현황 >

연번	정비대상 법률	소관부처	정비 유형	법률안 형식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복지부	중앙부처 승인 · 보고 완화	일부개정
2	결핵예방법	질병청	조례 위임 범위 확대	일괄개정
3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복지부	중앙부처 승인 · 보고 완화	
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복지부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복지부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복지부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부		
8	지역보건법	복지부		
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식약처	중앙부처 승인 · 보고 완화	일괄개정
10	식품위생법	식약처		
1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약처		

Ⅲ. 주요 내용별 검토

1. 조례 위임 범위 확대

- 법률 개정사항 중 「결핵예방법」 개정의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조치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수수료 또는 의료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질병관리청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결핵환자등의 의료) ①·② (생략)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의료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의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수료 또는 의료비는 <u>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제18조(결핵환자등의 의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결핵환자등에게 실시한 의료조치에 대한 수수료,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⁵⁾에 따라 보건복지부장

5)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①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

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을 근거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음.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제1호6)는 약제를 제외한 진찰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은 요양급여대상이 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즉, 현재 실무적으로도 질병관리청장이 결핵환자등에 대한 의료조치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 등의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바, 개정안과 같이 질병관리청장의 수수료 등의 기준 마련 근거를 삭제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은 현행법의 규정과 집행상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임.

2. 중앙부처에 대한 보고 규정 정비

- 법률 개정사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개 법률 개정의 경우,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통보” 또는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⁷⁾

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이 정해지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6)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7) 각 개정안의 친구조문대비표는 p. 10 [참고] 참조.

□ 일반적으로 “보고(報告)”는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업무절차 및 결과를 알린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그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일에 관한 내용이나 결과를 말이나 글로 알림”⁸⁾, “주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일에 관한 내용이나 결과를 말이나 글로 알림”⁹⁾, “지시 또는 감독하는 자에게 주어진 일의 내용이나 결과 따위를 말이나 글로 알림”¹⁰⁾ 등으로 설명되고 있음.

한편, “통보(通報)”는 지위나 권한의 상하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어떠한 사실을 알린다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는데, 그 사전적 의미는 “통지하여 보고함. 또는 그 보고”¹¹⁾ 또는 “어떤 사실을 알리어 줌”¹²⁾으로 그 의미가 풀이되어 있음.

“제출(提出)”은 그 사전적 의미를 보면, “문안(文案)이나 의견, 법안(法案) 따위를 냄”¹³⁾, “과제나 의견 따위를 내어놓음”¹⁴⁾으로 해석되는데, 일반적으로 일정한 문서의 형식으로 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됨.

□ 즉,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당 업무에 대하여 중앙부처가 지방자치단체의 상급기관으로서 감독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대하여 개정안과 같이 그 용어를 “통보” 또는 “제출”로 변경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대등한

8)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9) 국립국어원 “우리말 샘”

10) 고려대학교 “한국어대사전”

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 샘”

12) 고려대학교 “한국어대사전”

1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 샘”

14) 고려대학교 “한국어대사전”

관계로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의 하부 기관으로 보는 인식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효과 외에 실질적인 권한이나 내용 등의 변경은 수반하지 않음.

□ 개정 법률별로 시행일이 ‘ 공포한 날’ 또는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하위 법령 개정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일을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법제처(동의)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선택·결정·집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규범을 실정에 맞게 정립하는 자치입법권 보장이 필수적이므로, 지방자치단체 권한 행사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지방분권 및 자치입법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질병관리청(동의)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확보로 지방 분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 동의하며, 「결핵예방법」의 경우 현재 지자체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조례를 규정하여 의료조치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 중으로, 업무 차질 미발생 및 조문 유지 실익이 없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함.

3) 대한의사협회(「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 동 개정안과 같이 수수료 또는 의료비에 관한 사항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진다면 국가 시책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지자체별 의료비 또는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는 바, 동 개정안은 현행대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494

【참고】	중앙부처에 대한 보고 규정 정비 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개정안
제25조(조사 결과의 보고 등)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 수급자, 부양의무자 및 차상위계층을 조사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u>보고하여야</u> 하며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u>보고하여야 한다</u> . 시·도지사가 조사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5조(조사 결과의 통보 등) ----- ----- ----- ----- ----- <u>통보하여야 하</u> <u>며, 통보를 받은</u> ----- ----- - <u>통보하여야 한다</u> . ----- -----.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개정안
제6조의3(근무 지역 또는 기관의 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6조에 따라 조건을 이행 중인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안에서의 변경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제6조의3(근무 지역 또는 기관의 변경) -- ----- ----- ----- -----. ----- ----- ----- -----

라 한다)가 하며,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변경 사실을 <u>보고</u> 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① 제6조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는 사람은 매월의 근무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분기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u>보고</u>하여야 한다. ② (생략)	----- ----- <u>통보</u>----- -----. 제9조(보고 등) ① ----- ----- ----- ----- ----- <u>제출</u>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한 날.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개정안
제5조(종사명령 등) ① (생략)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명단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공중보건의사를 소집하여 공중보건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한 후 근무할 지역·기관 또는 시설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u>보고</u>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제5조(종사명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통보</u>-----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근무지역 등의 변경) ① (생략)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근무시설을 변경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u>보고</u>하여야 한다.	제6조(근무지역 등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통보</u>-----.
제6조의2(파견근무) ① (생략)	제6조의2(파견근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과견을 명령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 건복지부장관에게 <u>보고</u>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8조(직장 이탈 금지) ① ~ ③ (생 략) ④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무 지역 이탈 금지를 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u>보고</u>하 여야 한다.	② ----- ----- ----- ----- <u>통보</u>-----.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직장 이탈 금지) ① ~ ③ (현행과 같 음) ④ ----- ----- ----- ----- <u>통보</u>-- -----.
※ 시행일: 공포한 날. 다만, 제5조제2항·제6조제2항·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 개월이 경과한 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 ② (생 략)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실시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u>보고</u>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 <u>보고</u>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통보</u>-----. ④ ----- ----- ----- <u>통보</u> ----- -----.
※ 시행일: 공포한 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개정안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 ③ (생략)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역수급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u>보고</u> 하여야 한다.	④ ----- ----- ----- ----- <u>제출</u> -----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u>보고</u> 받은 지역수급계획 중 지역간 장사시설의 수급조정, 장사시설의 공동설치 및 장사시설에 관한 지역간 갈등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⑤ ----- <u>제출</u> ----- ----- ----- ----- ----- -----.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한 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개정안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 ⑥ (생략) ⑦ 시·도지사는 소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를 통하여 소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각각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u>보고</u> 하여야 한다. ⑧·⑨ (생략)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 ----- ----- <u>통보</u> ----- ----. ⑧·⑨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한 날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개정안
제27조(<u>보고 등</u>)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u>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u>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실태조사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27조(<u>자료 제출 등</u>) ----- ----- ----- ----- <u>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u> ----- ----- -----.
※ 시행일: 공포한 날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개정안
제60조(안전관리계획) ① ~ ③ (생략)	제60조(안전관리계획)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삭제	⑤ ----- ----- ----- 제출----- -----.
※ 시행일: 공포한 날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illegible]

보고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u>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u> 한다. 다만, 해당 식품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한 식품등이고, 보고의 무자가 해당 식품등을 수입한 자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① (생략)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에게 <u>보고하고</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u>보고하여야</u>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u>보고</u>의 내용이 국민 건강상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합동으로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생략)	----- ----- <u>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u> -----.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통보하고</u> ----- ----- ----- <u>제출하여야</u> -----. ③ ----- ----- <u>통보</u> ----- ----- ----- ----- ④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한 날. 다만, 제8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위해 축산물의 회수 및 폐기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축산물을 회수하여 폐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는 회수·폐기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하며, 그 회수·폐기 계획에 따른 회수·폐기 결과를 보고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u>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 다만, 해당 축산물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한 축산물이고, 보고의무자가 해당 축산물을 수입한자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31조의2(위해 축산물의 회수 및 폐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u>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u> -----. ----- ----- ----- ----- ----- ----- ----- ----- -----.
제3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축실적, 집유실적, 축산물가공품 또는 포장육의 생산실적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u>보고하여야 한다</u> .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제3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 ----- ----- ----- ----- ----- ----- ----- ----- ----- <u>통보하여야 한다</u> . ----- -----.
※ 시행일: 공포한 날	

